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 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19호 2011. 3. 3.(목)

【 조 례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1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2호(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3호(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1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5호(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6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 27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9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181호(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 50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197호(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51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주민 위원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1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생략)</p> <p>1.(생략)</p> <p>2. 기획주민위원회</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신 설></p> <p><u>가.</u>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나.</u>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다.</u>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라.</u> 어린이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u>마.</u> 각 동 사무 중 기획주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p> <p>3. (생략)</p>	<p>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기획주민위원회</p> <p style="color: blue;"><u>가.</u>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color: blue;"><u>나.</u> (현행 가목과 같음)</p> <p style="color: blue;"><u>다.</u> (현행 나목과 같음)</p> <p style="color: blue;"><u>라.</u> (현행 다목과 같음)</p> <p style="color: blue;"><u>마.</u> (현행 라목과 같음)</p> <p style="color: blue;"><u>바.</u> (현행 마목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 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제정 ○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대규모점포(SSM)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또는 그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유통상생협력계획의 수립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마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시 등록제한 규정 마련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2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유통”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4조(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연수구공무원 중 유통업무 및 중소기업 업무관련 부서 국장
2. 연수구의회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대표
나. 관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다.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관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연수구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연수구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들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⑦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등

제8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자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4. 용역이나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0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연수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연수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4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5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지정된 전통상업보전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생협력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6조(조건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
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
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시연수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
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
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 제3호,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p>	<p><input type="checkbox"/> 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아울러 주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추구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는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기본사업을 규정함 (제3조, 제4조) ○ 건강도시 기본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내지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3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물리적·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습관화
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
2.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
3.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
5. 주민의 건강한 생활 터 조성
6.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건강도시 기본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

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수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구청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연수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지역주민, 단체 중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 불참,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직무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인원 조정 : 1명→2명 ○ 감사 직무 신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4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을 “부위원장 2인, 감사를” 로 하고, 제4항 중 “부위원장은” 을 “부위원장, 감사는” 으로 하며, 제7항 중 “부위원장, 위원” 을 “부위원장, 감사, 위원” 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을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는 자치센터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구성 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u>부위원장</u>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고문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위원장과 <u>부위원장은</u> 위원중에서 호선하되-----</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위원장, <u>부위원장</u>, <u>위원</u> 및 고문의 임기는 -----</p> <p>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신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17조(구성 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u>부위원장 2인, 감사</u>를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장과 <u>부위원장</u>, <u>감사</u>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위원장, <u>부위원장</u>, <u>감사</u>, <u>위원</u> 및 고문의 임기는-----</p> <p>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감사는 자치센터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p> <p>④ (현행 ③항과 같음)</p> <p>⑤ (현행 ④항과 같음)</p> <p>⑥ (현행 ⑤항과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행안부 재정정책과-2287, '09.6.10)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12명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제4조제2항 및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5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9인 이내” 를 “9명 이상 12명 이하” 로 하고, 제4조제4항부터 제4조제7항까지를 제4조제5항부터 제4조제8항까지로 하며,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생략)</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9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9명 <u>이상 12명 이하</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 같음)</p> <p>⑧ (현행 제7항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6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영세노점상전업자 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p>	<p><input type="checkbox"/> 폐지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용자알선하고 그 용자금의 금리의 일부를 구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1995 .4.1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 행정환경 변화와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지급조례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 정비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제13조 :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및 민간단체 등 지원 ○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8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 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인천광역시 활성화계획과 연계방안
 3.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4. 연도별 활성화계획
 5.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6. 투자 우선순위 분석 및 연도별 사업계획
 7. 사업비 조달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3항, 제4항 중 “정비계획” 을 각각 “활성화계획”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이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

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우선 이용 및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명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및 연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

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u>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u> 2. <u>년도별 정비계획</u> 3. <u>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u> 4. <u>기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u> <p>③ 구청장은 <u>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u>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u> 2. <u>인천광역시 활성화계획과 연계방안</u> 3. <u>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u> 4. <u>연도별 활성화계획</u> 5. <u>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u> 6. <u>투자 우선순위 분석 및 연도별 사업계획</u> 7. <u>사업비 조달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u> 8. <u>그 밖에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u> <p>③ ----- <u>활성화계획</u>----- ----- -----<u>활성화</u> <u>계획</u>-----</p>

현 행	개 정 안
<p>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정비계획</u>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6조(재정지원) ① <u>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구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 할 수 있다.</u></p> <p>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u>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u>구청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④ ----- ----- ----- -----<u>활성화계획</u>----- -----</p> <p>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u>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u>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 <u>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② <u>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③ <u>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u></p> <p>제16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p> <p>① <u>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③ <u>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u></p> <p>④ <u>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u></p> <p>⑤ <u>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무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38 376 1458 678"><신 설> 제17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p> <p data-bbox="807 689 1458 992">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우선 이용 및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 data-bbox="638 1043 1458 1290"><신 설> 제18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 data-bbox="807 1301 1458 1395">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 data-bbox="807 1406 1458 1603">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p data-bbox="807 1615 1458 176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 data-bbox="638 1812 1458 2058"><신 설> 제1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35 376 1442 472"><신 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data-bbox="810 483 1453 887"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u> 2. <u>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u> 3.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u> 4. <u>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u> <p data-bbox="635 936 1453 1081"><신 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data-bbox="810 1093 1453 139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data-bbox="810 1406 1453 1753"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2명</u> 2. <u>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및 연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u> 3. <u>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u> 4. <u>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 data-bbox="810 1765 1453 19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35 376 778 421"><신 설></p> <p data-bbox="635 1272 778 1317"><신 설></p> <p data-bbox="635 1615 778 1659"><신 설></p>	<p data-bbox="794 376 1458 1227"> <u>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u>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u> <u>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u> <u>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② 공무원인 위원</u> <u>의 임기는 1항의 규정</u> <u>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u> <u>간으로 한다.</u> <u>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u> <u>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u>1.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여 사</u> <u>직을 원하는 경우</u> <u>2.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u> <u>자격이 상실된 경우</u> <u>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u> <u>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u> <u>판단되는 경우</u> </p> <p data-bbox="794 1272 1458 1563"> <u>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u> <u>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u> <u>괄한다.</u> <u>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u> <u>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u> <u>무를 대행한다.</u> </p> <p data-bbox="794 1615 1458 2056"> <u>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u> <u>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u> <u>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u> <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u> <u>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u> <u>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u> <u>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u> <u>찬성으로 의결한다.</u> </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시행규칙) (생략)</p>	<p><신 설> 제2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7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2010.7.15.)」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4836호, 2010.11.15)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조례 정비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개선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민간경력 규정 ○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 ○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 당직비 규정 정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3.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99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직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로 한다.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5조의2를 제25조로 하며, 제30조를 제26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② (생략) <신 설>	제2조(복무선서)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u>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③ (생략) ④ <u>당직비(일직·숙직비)는 “별표4”와 같다.</u>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직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삭 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생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u>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u> 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④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u> 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style="color: blue;"><삭 제></p>
<p>제25조 (생략)</p>	<p>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p>
<p>제25조의2 (생략)</p>	<p>제25조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p>
<p>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p style="color: blue;"><삭 제></p>
<p>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 style="color: blue;"><삭 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p><삭 제></p>
<p>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당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p>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위 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p><삭 제></p>
<p>제30조 (생략)</p>	<p>제26조 (현행 제30조와 같음)</p>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1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인천연수경찰서 행정사무동 증축공사】 사업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2. 2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연수구 연수동 635-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명칭】 인천연수경찰서 행정사무동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 12,278.3m²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지방경찰청연수경찰서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원인재로 138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10.06.30~2010.11.26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0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학경기장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청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82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1-13 외 2필지(1,980㎡)
5. 열람기간 : 2011. 03. 03. ~ 2011. 03. 17.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810-7468)
7. 의견서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연수구청(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2-810-7468)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	소유자	관계인	비고
1	연수구 선학동	211-13 (211-4)	박수근		토지
2	연수구 선학동	208-4 (208-2)	최병업		토지
3	연수구 선학동	143-6 (143-2)	최화식		토지